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고개요】

- 공 사 명: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공사
- 공사내용: 보안등 71등 정비, 점멸기 정비 50개소
- 기초금액: 금53,854,000원(추정가격: 금48,958,182원)
- 개찰일시: 2026. 03. 10. 12:00
-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6. 11:00 ~ 3. 10. 11:00

###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공사				
공 사 현 장	대전 중구 관내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보안등 71등 정비, 점멸기 정비 50개소				
공사예정금액 (A = B +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500,000	53,854,000	48,958,182	4,895,818	45,646,000	0

###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같음합니다.

###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같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042-606-6846)

#### 4. 견적서 제출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6. 11:00 ~ 2026. 3. 10. 11:00
-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0. 12: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직접공사비
  -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비율
  -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2,938,823	885,691	1,170,246	116,379	-	766,507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중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발주 공사에 대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 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문의 사항**

-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건설과 / ☎ 042-606-6846
-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2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3. 4.**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 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